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2019. 8. 28. 규정 제799호

1. 개정사유

- 최근 대학원 전반에 걸쳐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원에서 우리대학 특수대학원만 학위논문이 졸업요건으로 되어 있기에 특수대학원 무논문 학위수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스포츠 및 체육,건강관련전공이 개설된 특수대학원 경북대 등 20개 대학조사 (100%무논문)
 - 교육대학원 및 교육전문대학원 20개 대학조사(서울교대 제외하고 100%무논문)
- 이에 무논문 학위수여 제도를 도입하고 논문대체 인정방법으로 수료학점 30학점 이상 이수를 통해 논문작성을 대체하고자 함.
- 사회체육대학원에 수요자 요구에 필요한 전공을 신설하고 3년간 모집인원 미달전공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석사과정 입학자격에 대한 자구수정(안 제36조)
- 특수대학원 무논문 선택과정은 30학점 이상 이수(안 제57조)
- 대학원졸업을 위해서는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해야 하는 요건에 무논문 신청자에게도 학위수여 인정(안 68조)
- 사회체육대학원 전공 신설 및 폐지(안 별표2)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TF팀 보고서 의견수렴
- 라. 불 입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개정문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1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전항” 을 “제1항” 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다. 다만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전공은 예외” 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원자격증 소지자” 로 한다.

제57조제4항 본문 중 “스포츠코칭 석사과정 36학점” 을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무논문 선택과정은 30학점” 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의 “제57조 제4항” 을 “제57조제4항” 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무논문 선택과정 신청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제외한다.
제68조제3항의 “제57조 제4항” 을 “제57조제4항” 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별표2에서 “건강관리전공” 을 “운동건강관리전공” 으로 하고, “글로벌스포츠리더전공” 을 삭제하고, “스포츠경기심판전공, 스포츠안전관리전공” 을 신설한다.

부 칙(제799호, 2019. 8. 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7조제4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석사과정 입학자격) ①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법령에 <u>의하여</u>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p> <p>② 교육대학원 입학자격은 <u>전항의</u> 해당자로서 <u>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다. 다만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전공은 예외로 한다.</u></p>	<p>제36조(석사과정 입학자격) ① ----- -----<u>어느 하나에</u>-----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따라</u> ----- -----</p> <p>② -----<u>제1항</u>----- --- <u>「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원자격증 소지자</u>----- -----.</p>
<p>제57조(과정이수 학점) 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p> <p>②·③ (생 략)</p> <p>④ 대학원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u>스포츠코칭 석사과정 36학점</u>)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석박사60학점 이상으로 한다.</p>	<p>제57조(과정이수 학점) ① 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무논문 선택과정은 30학점</u>)----- -----.</p>
<p>제68조(대학원 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u>제57조 제4항의</u>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p> <p>② (생 략)</p> <p>③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규정된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u>제57조 제4항의</u>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u>별지 제2호 서식</u>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인 자 중 석사과정만 수료하고자 하는 자는</p>	<p>제68조(대학원 과정의 졸업) ① ----- ----- <u>제57조제4항</u>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단, <u>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무논문 선택과정 신청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제외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제57조제4항</u>----- ----- <u>별지 제2호서식</u>----- -----.</p>

현 행		개 정 안		
석사과정을 적용한다.		-----.		
[별표 2] 대학원과정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학칙 제14조 관련)		[별표 2] 대학원과정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학칙 제14조 관련)		
대학원명	학위과정	학과(전공)	입학정원 2017	
대학원	석사과정	체육학과	82	
	박사과정	체육학과	28	
사회체육대학원	석사과정	생활체육전공	132	
		건강관리전공		
		스포츠산업·경영전공		
		태권도전공		
		생활무용전공		
		글로벌스포츠리더전공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20	
		스포츠재활전공		
		장애인체육전공		
		학교체육교육전공		
		합계		262
		합계		262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제799호, 2019. 8. 28.)</p> <p>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제57조제4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p>		